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고용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780 발의연월일: 2020. 10. 29.

발 의 자:고용진·김경협·김병욱

김주영 · 류성걸 · 오영환

윤후덕 • 이규민 • 이탄희

정일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운영인의 해당 연도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1천분의 1에서 100분의 1까지의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하여 내·외국인의 입국 및 출국이 제한되는 상황이며, 판매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것을 판매의 전제로 하는 면세점 산업은 막대한 영업손실 및 종사자의 고용 불안정에 직면하여 있음.

이에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부여받은 자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 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피해를 경감하고자 함(안제176조의2제4항단서 신설).

법률 제 호
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6조의2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 특허심 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제176조의2(특허보세구역의 특례) | 제176조의2(특허보세구역의 특례) |
| ① ~ ③ (생 략) |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|
| ④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| 4 |
| 제17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 | |
| 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 | |
| (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| |
| 매출액을 말한다)을 기준으로 | |
|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| |
|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 | |
| 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. | |
| <단서 신설> | 다만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|
| | 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 |
| | 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심대 |
| | 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 |
| | 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 |
| | 쳐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|
| |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수수료를 |
| | 감경할 수 있다. |
| ⑤ ~ ⑧ (생 략) | ⑤ ~ ⑧ (현행과 같음) |